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담당자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진아
제 목 :	[보도자료]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전송매수 :	총 2매

## [보도자료]

###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직접고용 책임 방치하는 정부와 도로공사 규탄한다."**

□ 일시 및 장소: 2019. 9. 20.(금) 11:30, 청와대 분수대 앞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무더운 여름을 시작에서, 도로교통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 1500명을 한달 사이에 해고합니다. 자회사로의 이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1500명의 노동자 중 500여명은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었고, 나머지도 1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충분히 판단을 보고 노동자들의 거처를 정할 수 있었음에도 서둘러 1500명을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단을 불문하고 1500여명의 노동자를 하나도 직고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였습니다.
3. 그러나 1500명의 노동자들은 여러개의 노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로 똘똘 뭉쳐 더운 여름을 서울톨게이트 케노피 위와 청와대 앞에서 지세웠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지칠 법도 한데, 노동자들은 언제나 밝고 힘차게 투쟁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열기는 대법원에도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8월 29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최종 확정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다 같이 싸우던 1500명의 노동자들은 얼싸 안고 서로서로에서 축하를 전달했고, 곧 현장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으로 복귀할 것을 꿈꿨습니다.

4.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의 이강래 사장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대법원 판결의 원고였던 300여명의 노동자들에 대하여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용하는 것이며, 대법원의 의사와 해석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곧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나머지 톨게이트 노동자들도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임이 확인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절차와 과정을 악용하여 나머지 노동자들이 지쳐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과 나머지 노동자들을 분열하여 노동자의 단일한 투쟁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꼼수에 맞서 1500명의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는 가열한 투쟁을 가하며 어느새 찬바람이 부는 가능성을 맞이했습니다.

5. 노동법률가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악용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를 뒤에서 봐주며 이용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 1500명의 투쟁하는 모든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고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자회견의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시고,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순서

- 톨게이트 노동조합: 톨게이트지부 장성지회 강미진 지회장
- 법률단체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신인수
-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별첨: [기자회견문]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

## [기자회견문]

###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라!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한결같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사람들만 직접고용하고,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은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전국에 산재한 톨게이트 영업소는 통일적으로 운영·관리된다. 서울톨게이트 영업소가 불법파견이라면 대전, 부산, 광주톨게이트 영업소도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근무관계가 다르지 않고, 다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5번에 걸친 1·2심 판결, 마침내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더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도로공사는 1·2심에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경우 과도한 특혜를 부여해 이미 자회사로 간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는 것,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하라는 것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최소한의 법적·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이다.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파견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다.

오늘(9/20)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 들어간지 12일차, 10m 높이의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82일째이다. 지난 7월 1일 부당해고된 이래 임금중단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고, 장기간 농성으로 몸과 마음이 심각하게 상처를 받고 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노동법률가단체는 현 정부의 무책임과 무성의한 태도에 분노하며, 지금 당장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 간접고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다. 동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의 문제이자 공공기관의 공적 책무에 관한 리트머스 시험지이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 1,500명 전원을 즉시 직접고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와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 9. 2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